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공 간 정 보 의 구 축 및 관 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측량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공공측량 등 업무수행시 복수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측량업자가 업종을 추가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등록 기준을 경감하도록 하여 사업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
로운 시장 개척을 유도하여 측량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측량업 등록 장비기준을 금속관로 탐지기 뿐 아니라 비금속관로 탐
지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함.

3.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장비를 확대하여 현행 금속관로탐지기 뿐 아
니라 비금속관로탐지기도 포함함에 따라 측량기기 정확도를 확보하
고 측량성과 품질을 제고함(제97조 제1항)

나.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추가로 측량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업체 부담
을 완화함. ([별표 8] 비교 6)

다. 지하시설물 측량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지하시설물측량의 등록, 성과심사 및 성능검사 금속탐지기 뿐만 아니라 비금속탐지기가 도입을 위해 미비점 개선 . ([별표 8], [별표 11], [별표 1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없 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6호 중 “금속관로 탐지기”를 “관로탐지기(금속·비금속)”으로 한다.

별표 8의 지하시설물 측량업의 장비란 제1호기호(·) 및 기호(·) 외의 부분 중 “금속관로탐지기”를 “관로탐지기(금속 또는 비금속, 탐사깊이 3m) 1대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추가로 다른 측량업을 등록하거나 2가지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1의 금속관로탐지기성능검사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로탐지기(금속·비금속)성능검	관로탐지기(금속 및 비금속) 검사시설 각	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	------------------------	---

사대행자	1식 이상	사람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중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

별표 11 비고 제5호 중 “금속관로탐지기성능검사대행자”를 “관로탐지기(금속·비금속)성능검사대행자”로 한다.

별표 12 장비란 제4호의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미터 기준 정확도: 평면위치 ± 20 센티미터 이내, 깊이 ± 30 센티미터 이내): 1대 이상”을 “관로탐지기(금속 및 비금속, 탐사깊이 3미터 기준 정확도: 평면위치 ± 20 센티미터 이내, 깊이 ± 30 센티미터 이내): 각 1대 이상”로 하고, 같은 란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u>금속관로 탐지기</u>: 3년 ②·③ (생략) [별표 8]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관로탐지기(금속·비금속)</u>: - -----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8]																								
<table><tr><th>구분</th><th>기술인력</th><th>장비</th></tr><tr><td rowspan="4">지하시설물 측량업</td><td>1. 고급기술인 1명 이상</td><td>1. <u>금속관로탐지기</u> (탐사깊이 3미터 기준)</td></tr><tr><td>2. 중급기술인 1명 이상</td><td>·탐사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td></tr><tr><td>3. 초급기술인 1명 이상</td><td>·탐사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td></tr><tr><td>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td><td>2. 맨홀탐지기 1대 이상 3. 트랜싯(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td></tr></table>	구분	기술인력	장비	지하시설물 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1. <u>금속관로탐지기</u> (탐사깊이 3미터 기준)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탐사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탐사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2. 맨홀탐지기 1대 이상 3. 트랜싯(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table><tr><th>구분</th><th>기술인력</th><th>장비</th></tr><tr><td rowspan="4">지하시설물 측량업</td><td>1. 고급기술인 1명 이상</td><td>1. <u>관로탐지기(금속 또는 비금속, 탐사깊이 3미터 기준) 1대 이상</u></td></tr><tr><td>2. 중급기술인 1명 이상</td><td>·탐사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td></tr><tr><td>3. 초급기술인 1명 이상</td><td>·탐사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td></tr><tr><td>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td><td>2. 맨홀탐지기 1대 이상 3. 트랜싯(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td></tr></table>	구분	기술인력	장비	지하시설물 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1. <u>관로탐지기(금속 또는 비금속, 탐사깊이 3미터 기준) 1대 이상</u>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탐사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탐사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2. 맨홀탐지기 1대 이상 3. 트랜싯(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구분	기술인력	장비																							
지하시설물 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1. <u>금속관로탐지기</u> (탐사깊이 3미터 기준)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탐사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탐사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2. 맨홀탐지기 1대 이상 3. 트랜싯(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구분	기술인력	장비																							
지하시설물 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1. <u>관로탐지기(금속 또는 비금속, 탐사깊이 3미터 기준) 1대 이상</u>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탐사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탐사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2. 맨홀탐지기 1대 이상 3. 트랜싯(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비고 6. <u>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항공촬영업·공간영</u>	비고 6. <u>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추가로 다른 측량업을 등록하거나 2가지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u>																								

상도화업·영상처리업 및 수치지
도제작업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등
록기준을 요구하는 업종은 100
퍼센트 이상의 기준을 갖추고,
낮은 수준의 업종은 50퍼센트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1]

<u>금속관 로탐지 기성능 검사대 행자</u>	<u>금속관로탐 지기 검사시 설 각1식 이 상</u>	1.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분야 고 급기술인 또는 정밀측정 산업기 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 람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중 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분 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

비고 5. 일반성능검사대행자와 금속관로탐지기성능검사대행자를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2]

기 술 인 력	장 비
---------	-----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별표 11]

<u>관로탐 지기(금 속·비 금속)성 능검사 대행자</u>	<u>관로탐지기 (금속 및 비 금속) 검사시 설 각1식 이 상</u>	1.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분야 고 급기술인 또는 정밀측정 산업기 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 람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중 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분 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

비고 5. 일반성능검사대행자와 관로탐지기(금속·비금속)성능검사대행자를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2]

기 술 인 력	장 비
---------	-----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1. GPS수신기(1급): 3대 이상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1. GPS수신기(1급): 3대 이상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2. 토털 스테이션(1급): 1대 이상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2. 토털 스테이션(1급): 1대 이상
3.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레벨(1급): 1대 이상	3.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레벨(1급): 1대 이상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u>금속관로탐지기</u> (탐사깊이 3미터 기준 정확도: 평면위치 ± 20 센티미터 이내, 깊이 ± 30 센티미터 이내): 1대 이상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u>관로탐지기</u> (<u>금속 및 비금속</u> , 탐사깊이 3미터 기준 정확도: 평면위치 ± 20 센티미터 이내, 깊이 ± 30 센티미터 이내): 1대 이상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상	5. <u>비금속관로탐지기</u> (탐사깊이 3m 기준 정확도: 평면위치 ± 20 센티미터 이내, 깊이 ± 40 센티미터 이내): 1대 이상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상	5. <삭 제>
6. 고급기능사 가. 도화기능사: 2명 이상 나. 지도제작기능사: 1명 이상	6. 지하영상레이더 탐사기 : 1대 이상 7. 맨홀탐지기: 1대 이상 8. 도화기: 1대 이상 9. 출력장치: 1대 이상 10.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11. 수치지도 입력·출력	6. 고급기능사 가. 도화기능사: 2명 이상 나. 지도제작기능사: 1명 이상	5. 지하영상레이더 탐사기 : 1대 이상 6. 맨홀탐지기: 1대 이상 7. 도화기: 1대 이상 8. 출력장치: 1대 이상 9.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10. 수치지도 입력·출력 및 GPS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1식

	력 및 GPS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1식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